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3.

발의자 : 윤재옥 · 태영호 · 권성동
김영식 · 김석기 · 박형수
이인선 · 양금희 · 김상훈
김희곤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이 그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, 임금 손실액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지급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효율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68조의2 신설 등)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,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.

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2(자료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피해 또

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(이하 “피해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 사항증명서
 2.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 초본
 3.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·항공기· 요트 등 재산 자료(등록원부를 포함한다)
 4.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·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
 5.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

면 제한다.

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8조의2(자료·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)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8조(포상 및 보상 등) ① ~</p> <p>⑥ (생 략)</p> <p>⑦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익신고자 등”은 “신고자 및 협조자”로 본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68조(포상 및 보상 등) ① ~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,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.</p>
<p><신 설></p>	

<신 설>

제68조의2(자료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(이하 “피해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
2.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초본
3.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·항공기·요트 등 재산 자료(등록원부를 포함한다)
4.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

프·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

이용권에 관한 자료

5.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제88조의2(자료·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)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

<신 설>

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한다.